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2. 15 선고 2019가단57307(본소), 2020가단54304(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박영재

변 론 종 결 2020. 11. 17.

판 결 선 고 2020. 12.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원주시 C 전 24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2003. 10. 10. 접수 제545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부터 돈거래를 해온 사실, 피고가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소 소유의 반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10.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그러다 피고가 기존 차용증(갑 제1호증의 1~4)을 합하여 2019. 2. 11.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5,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 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기존에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린 80,000,000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한 렉서스승용차 매매대금 20,000,000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대여해 주기로 한 100,000,000원에 대한 것으로 실제 대여금은 80,000,000원에 불과한데, 위 80,000,000원에 대하여도 피고가 원고의 처인 D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D이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금원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가단57314)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고의 청구 중 80,000,000원은

도박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채권양도로 소멸하였고,

나머지 120,000,000원 역시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 청구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무효 또는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도박자금을 담보하거나 도박 및 도박 채무사실을

알리겠다는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도박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나, 역시 피고가 제출한 을 제8,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수영